

정관개정의 건

○ 취지 및 배경

1) 이사회 의결 제한

: 인천녹색연합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회원 총회임. 임원 등 이사회 구성과 단체 존립 관련해서는 회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.

: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과 임원 추천을 위한 방식과 운영 규정은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함.

2) 상임대표 중임으로 제한

3) 협동사무처장 제도 도입

: 사무처장에게 권한과 역할이 과중되어 있으며, 인천녹색연합 활동 규모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판단임. 이에 협동사무처장 제도를 도입해 권한과 역할을 분배하고자 함. 참고로, 녹색연합의 경우 협동사무처장을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침.

○ 정관 개정(안)

기존 정관	개정안
<p>제15조(임원의 임기)</p> <p>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2.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.</p>	<p>제15조(임원의 임기)</p> <p>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단, 상임대표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2.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.</p>
(신설)	<p>제26조(사무처)</p> <p>.</p> <p>3. (협동사무처장)</p> <p>① 사무처 원활한 활동과 역할의 분배를 위해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협동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③ 사무처장과 협의하며 업무를 분담한다.</p>

<p>제23조(이사회)</p> <p>.</p> <p>4.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</p> <p>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② 법인 사무처와 지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해산</p> <p>③ 분과위원회 설치와 해소, 위원장 승인</p> <p>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⑤ 총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사항</p> <p>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⑦ 집행위원회 구성</p> <p>⑧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</p> <p>⑨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의 의결</p> <p>⑩ 내규 제정과 개정</p> <p>⑪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⑫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3조(이사회)</p> <p>.</p> <p>4.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</p> <p>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② 법인 사무처와 지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해산</p> <p>③ 분과위원회 설치와 해소, 위원장 승인</p> <p>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⑤ 총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사항(제20조 제 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.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. 예산과 결산의 승인 5. 사업계획의 승인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</div> <p>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⑦ 집행위원회 구성</p> <p>⑧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</p> <p>⑨ <u>협동사무처장 선임 (신설)</u></p> <p>⑩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의 의결</p> <p>⑪ 내규 제정과 개정</p> <p>⑫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⑬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
<p>제25조(집행위원회)</p> <p>1. (지위)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, 사무처장, 분과위원장, 회원소모임 대표,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를 당연</p>	<p>제25조(집행위원회)</p> <p>1. (지위)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, 사무처장, <u>협동사무처장</u>, 분과위원장, 회원소모임 대표, 지회 및 부설기</p>

<p>직 위원으로,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.</p>	<p>구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,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.</p>
---	---